

인지세(전자수입인지) 안내문

인지세법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계약 체결 시 인지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. 따라서, 인지세 납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당첨자 대상으로 정당계약 진행 시 필히 "전자수입인지" 구입 후 지참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. (미 지참 시 계약불가)

□ 인지세 과세대상 및 납부기한

과세대상	납부기한	기재금액	비고
부동산 분양계약서	계약체결일	분양대금 (총 공급금액)	매수인 보관용계약서에 첨부
분양권 전매계약서	명의변경 승인일	실제 거래가격 (분양대금 + 프리미엄)	

□ 세액

기재금액	세액
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	20,000원
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	40,000원
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	70,000원
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150,000원
10억원 초과	350,000원

□ 가산세 : 기간별 최대 300% 부과 (관련법령 : 국세기본법 제 47조 4 제 9항, "21. 1. 1부터 적용")

기간	납부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	3개월 초과 6개월 이내	6개월 초과
가산세	무(과소)납부 세액의 100%	무(과소)납부 세액의 200%	무(과소)납부 세액의 300%

※ 납부기간 :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

□ 전자수입인지 구입처 : 전자수입인지 사이트(e-revenuestamp.or.kr), 우체국, 은행

구분	온라인	오프라인
구입처	전자수입인지 사이트(https://www.e-revenuestamp.or.kr)	우체국, 은행
구입방법	①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접속 또는 네이버에 "전자수입인지" 검색 ② "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" 클릭 ③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④ "구매" 클릭 후 납부정보 입력 - 용도 : 인지세 납부 - 과세문서 종류 : 1.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- 금액 :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 - 매수 : 1매 ⑤ 결제 (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) ⑥ 출력 ※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(재발행 불가) ⑦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	① 인근 우체국 또는 은행 방문 ② 전자수입인지 구매신청서 작성 - 용도 : 인지세납부 - 금액 :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 - 매수 : 1매 - 성명 / 주민등록번호 / 연락처 기재 ③ 결제 (현금납부만 가능) ④ 전자수입인지 발급 ⑤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

※ 계약체결 시 인지세가 납부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시에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.

※ 전자수입인지는 종이문서용으로 구입하셔야 하며,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않고 계약 당사자간에 인지세를 현금으로 인계하는 것은 납세의무 미이행으로 가산세 부과대상입니다.

※ 분양권 전매계약서 작성 시 "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"에 해당하므로 계약 당사자간에 서명·날인을 할 때에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, 여러 회 전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매 때마다 인지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.

"계약 시 전자수입인지를 사본 또는 FAX(032-822-9827)로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"